

# 2020년 하반기 축산물품질평가직 채용 공고

축산물품질평가원은 국내산 축산물의 품질을 과학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축산물등급판정업무와 생산에서 소비까지 전(全)단계를 관리하는 축산물이력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으로서 미래를 함께 열어 갈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0년 9월 11일  
축산물품질평가원장

# 2020년 하반기 축산물품질평가직 채용 공고

## 1. 채용분야 및 내용

직군(직급)	인원	업무내용
축산물품질평가직 (6급)	19명	• 축산물등급판정, 축산물이력제, 축산물유통사업 등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및 부대사업

※ 업무내용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직무기술서 참고[붙임1 참조]

## 2. 근무조건

구분	내용
임용일(예정)	2020. 11. 30.(월)
근로형태	정규직(수습 3개월 후 정식임용)
근무지	전국
근무시간	전일제(주 40시간, 일 8시간 근무)
보수 및 복리후생비	연간 2,800만원 내외

- ※ 1. 임용일은 경력자의 경우 행정소요기간을 감안하여 조정될 수 있음  
 2. 근무지는 교육기간 이후 개인별 교육성적 등을 감안하여 배치  
 3. 근무시간은 9:00~18:00이며, 근무지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보수 및 복리후생비는 기본급, 중식비, 교통비, 효도휴가비 포함, 인센티브 성과금은 별도

## 3.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구분	내용
응시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산법」제37조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축산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21년 2월 졸업예정자 응시 가능)</li> <li>• 외국어능력 기준 점수 이상인 자[붙임 2 참조]</li> </ul>
결격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사규정」제22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li> <li>• 「직원채용 업무지침」제13조에 따른 신체검사합격기준 미달인 사람[붙임3 참조]</li> </ul>

## 4. 전형절차

구분	전형	평가기준 및 배점	선발배수	합격자 기준 및 동점자 처리기준
1차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사지원서(적·부)</li> <li>자기소개서(100점)</li> </ul>	4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사지원서(응시자격) 적격자 중 자기소개서 평가 40점 이상 고득점자 순</li> <li>※ 동점자 전원 합격</li> </ul>
2차	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성검사(적·부)</li> <li>직업기초능력평가(100점)</li> <li>직무수행능력평가(30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산학개론(100점)</li> <li>- 식육학(100점)</li> <li>- 축산식품관련 미생물학(100점)</li> </ul> </li> </ul>	2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성검사 적격자 중 직업기초능력평가 40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li> <li>직무수행능력평가 과목별 40점 이상, 3개 과목 평균 60점 이상 고득점자 순</li> <li>※ 동점자 전원 합격</li> </ul>
3차	면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면접(상황·경험, 100점)</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면접평점 60점 이상인 자</li> </ul>
	신체 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로 제출로 대체</li> </ul>	적·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검사결과 합격 시 적합자로 선정</li> </ul>
최종합격자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직무수행능력평가 + 면접</li> </ul>	선발인원의 1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직무수행능력평가와 면접결과를 50 : 50으로 합산한 결과 고득점자 순</li> <li>※ 동점자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비수도권 지역인재</li> <li>② 직무수행능력평가 고득점자</li> <li>③ 면접항목 중 “인성 및 적성” 점수 고득점자</li> <li>④ 면접항목 중 “전문지식 및 일반교양” 점수 고득점자</li> <li>⑤ 면접항목 중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점수 고득점자</li> </ul> </li> </ul>

- ※ 1. 「직원채용 업무지침」에 따라 면접평점 60점 이상이라도 면접위원 전원이 심사항목 중 같은 항목에 대하여 불량으로 평가할 경우 탈락처리
2. 최종합격자 결정단계에서 선발인원을 제외한 후순위자는 전원 차순위 부여
3. 최종합격자 발표이후 임용포기 및 퇴사자 등의 사유발생 시 차순위 순으로 임용되며, 임용유효기간은 최초합격자 임용일로부터 3개월

### □ 전형별 세부 평가요소

구분	내용	
필기 전형	인성검사	태도, 직업윤리, 대인관계능력 등의 인성전반 평가
	직업기초능력평가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개발능력, 수리능력, 자원관리능력
	직무수행능력평가	축산학개론, 식육학, 축산식품관련 미생물학
면접전형	경험·상황면접으로 직무 및 조직적합도 평가	

- ※ 1. 직업기초능력평가 50문항(분야별 10문항)
2. 인성검사 문항 수는 출제기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100~300문항)
3. 직무수행능력평가는 75문항(과목별 25문항)

## 5. 가점 및 우대사항

구분	해당전형	세부내용	가점비율
가점	취업지원 대상자	서류·필기·면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만점의 5% 또는 10%
	장애인	서류·필기·면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만점의 5%
	기타가점	서류 대학생축산물품질평가대회(대학생가치드림) 입상자 축산물품질평가원 청년인턴 수료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	만점의 2%
우대	비수도권 지역인재	최종합격자 결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비수도권 지역인재	동점자 우대
	이전지역 지역인재	서류·필기·면접 이전지역인재 합격인원 비율이 24%에 미달할 경우 '합격선 -3점' 이내 이전지역인재 불합격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처리	-

- ※ 1. 전형별 합격기준 미달 시 가점을 적용하지 않음  
 2.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 가점은 중복적용 없이 가장 유리한 1개만 적용  
 3. 기타가점은 중복적용 없이 1개만 적용하며, 청년인턴 수료자의 경우 채용공고상의 근무기간을 모두 근무한 경우에만 인정(개인 사정으로 인한 중도 퇴사의 경우 인정하지 않음)  
 4. 이전지역인재 우대는 「혁신도시법 시행령」 제30조2제4항제6호에 따라 채용시험에 응시한 지원자 중 이전지역인재 비율이 24% 이하인 경우 적용하지 않음  
 5. 이전지역 지역인재의 적용 대상은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 기준 충청북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소재 학교 졸업(예정)자

## 6. 전형일정

전형단계	일정	비고
채용공고 및 접수	(공고) 9. 11.(금) ~ 9. 28.(월) (접수) 9. 18.(금) ~ 9. 28.(월)	• 공고 17일간, 접수 10일간
서류합격자 발표	10. 14.(수)	• 축산물품질평가원 채용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증빙서류제출	10. 14.(수) ~ 10. 16.(금)	
필기시험	10. 17.(토)	• 필기장소 : 별도공지
필기합격자 발표	11. 4. (수)	• 축산물품질평가원 채용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면접	11. 11.(수) ~ 11. 12.(목)	• 면접장소 : 별도공지
최종합격자 발표	11. 19.(목)	• 축산물품질평가원 채용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신체검사	11. 19.(목) ~ 11. 27.(금)	• 11. 27.(금) 15시까지 제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제출로 대체하며 채용 홈페이지에 업로드
임용	11. 30.(월)	• 경력자의 경우 행정소요기간을 감안하여 임용일이 조정될 수 있음

- ※ 상기 일정과·장소 및 채용방식은 국가적 상황 및 천재지변 등에 따라 변동(예 : 대면→비대면, 일정 조정 등)될 수 있으며, 변동사항은 채용홈페이지에 공지

## 7. 제출서류 안내

전형단계	대상	제출서류	용도	비고
서류전형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사지원서</li> <li>자기소개서</li> <li>개인정보 제공동의서</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온라인 접수</li> </ul>
증빙 서류제출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적증명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응시자격 확인 (축산관련학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류제출 기간 내 온라인 업로드</li> </ul>
	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li> <li>장애인등록증</li> <li>자격증 등(사본)</li> <li>최종학력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점 및 우대사항 확인</li> </ul>	
면접전형 및 신체검사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등록초본</li> <li>주민등록등본</li> <li>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병역사항 확인</li> <li>비위면직자 조회</li> <li>결격사유 확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등록번호(13자리)가 모두 표시되도록 발급하여 원본 제출</li> </ul>

- ※ 1. 성적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및 장애인등록증은 증빙서류제출 마감일 기준 30일 이내에 인터넷으로 발급(문서확인번호 16자리 필요)하여 제출.
2. 취업지원대상자 증빙서류는 서류제출 마감일 기준 30일 이내에 축산물품질평가원을 제출처로 발급하여 제출
3.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필기, 면접전형 시 본인확인을 위한 추가사항 입력과 입력방법, 기간에 대한 안내 예정(주민등록상 생년월일, 본인 확인이 가능한 증명사진 제출요청)

## 8.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블라인드 채용안내

-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정보를 요구하지 않음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에 개인 인적사항(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적 조건 등)이 드러나는 기재 일체 금지
  - \* 현주소, 메일주소 작성 시 학교명 및 직장이 간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이후 제출하는 증빙서류는 응시자격 및 가점사항 확인용이며, 면접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음

## 9. 채용비리 구제방법 및 이의신청 안내

### □ 피해자 구제방법

- 단계별 성적순에 따라 적격자\* 전원 예비순번 부여
  - \* 적격자: 과락, 전형 불참, 서류 미제출 등의 부적격 사유가 없는 자
- 부정청탁 등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발생 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간 예비순번에 따라 구제
- 피해자 구제 방법은 우리원 내규(「인사규정」 제21조의 2)에 따름

## □ 이의신청

- 접수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 접수방법 : 우리원 채용홈페이지 이의신청메뉴에 신청내용 기재
-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가 아닌 경우에 한해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 후 답변

###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

- ①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 ②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 등), 지적재산권(외부 출제기관)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 ③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 10. 채용서류의 반환

- 제출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반환청구기간 내에 청구된 반환청구분에 한하여 반환하며,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는 채용서류 반환이 불가
  - (청구기간) 채용 여부 확정일 이후 14일부터 90일까지
  - (청구방법) 최종합격자 발표 시 최종합격이 되지 않은 구직자는 메일, 전화, 팩스 등으로 요청(채용서류 반환 신청서 접수 시 14일 이내 송부)
  - (청구대상) 전자서류를 제외한 제출 서류
  - (반환방법) 등기우편물 또는 직접 방문수령

## 11. 코로나19 관련 안내사항

-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 정도 및 예방수칙 강화 등에 따라 전형별 (필기·면접전형) 일정, 장소 및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채용전형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전형별 합격자는 건강관리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기시험일 및 면접일 기준 14일 이내 해외 여행력이 있는 사람
  - 코로나19 환자 및 감염병 의심자 등 격리 대상자
  - 입원치료통지서(또는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아 격리중인 자
- 시험 당일 마스크 미착용자(대면시험일 경우)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신분확인을 위한 시간 외에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여야 합니다.

- 전형 참석 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 사람은 일정이 지연되거나 응시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12. 기타

- 지원서 허위작성 또는 기재착오, 기재누락, 증명서 위·변조, 기한 내 서류 미제출자, 부정행위,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손해(불합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채용공고는 우리원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우리원 홈페이지에 공고 및 개별통보 함
- 동일 공고기간 내 진행 중인 다른 분야 채용에 중복지원 불가하며, 중복지원 사실 확인 시 탈락처리
- 축산물품질평가원 「인사규정」제22조, 「직원채용 업무지침」제13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직원채용 업무지침」제22조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되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됨
- 전형단계별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임용이후라도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임용 후 수습기간 중 처음 1개월간 시간선택제(주30시간 근무) 시행
- 기타 문의사항은 인재개발처(☎ 044-410-7032~6)로 문의

## NCS기반 채용 직무설명서 - 축산물품질평가직

채용분야		축산물품질평가	
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21. 식품가공	01. 식품가공	01. 식품가공 02. 식품저장	03. 축산식품가공 03. 축산식품저장
24. 농림어업	02. 축산	01. 축산자원개발 02. 사육관리	01. 사료생산 02. 종축 01. 젖소사육 02. 돼지사육 03. 가금사육 04. 한우사육
02. 경영·회계·사무	01. 기획사무	03. 마케팅	02. 고객관리
<b>NCS 미개발 업무 (축산물이력제사업·축산물유통사업)</b>			
<b>기관 주요사업</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산물등급판정, 축산물이력제, 축산물유통사업, 연구·조사, 정보화, 축산(물) 생산 컨설팅 및 지도교육·홍보, 국제협력, 우수 축산물브랜드 인증 등 기타 국가 등으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과 부대사업</li> </ul>		
<b>직무수행 내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축산식품저장)</b> 축산물(소, 돼지, 가금류, 계란) 등급판정 및 등급판정결과의 피드백·컨설팅 제공, 등급판정 관련 제도 및 기준 연구·조사, 등급판정인(印)과 관련 장비, 작업장 준수사항 등을 점검·관리하는 업무</li> <li>○ <b>(축산식품가공)</b> 축산물품질공정관리업체(식육포장처리업체) 지정심사 및 지정업체를 관리하는 업무(위생관리 등)</li> <li>○ <b>(축산물이력제사업)</b> 가축 및 축산물 이행주체(생산자, 유통업자) 관리, 이력 정보(소, 돼지, 가금산물)의 조사·검증, 생산·유통 현장 점검과 장비 등 관리</li> <li>○ <b>(축산물유통사업)</b> 축산물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생산, 유통단계별 가격, 경로 등의 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조사하는 축산물유통사업 업무</li> <li>○ <b>(축산자원개발 및 사육관리)</b> 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며,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제도, 축산 관련 통계 등을 지도교육·홍보하는 업무</li> <li>○ <b>(고객관리)</b> 기관 인지도 및 제도 수용도 제고를 위해 고객의 니즈에 적합한 대응·지원, 고객 요구사항 등을 대응·관리하는 업무</li> <li>○ <b>(사무행정)</b> 부서 구성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문서관리, 문서작성, 데이터관리, 사무자동화 관리 운용 등 조직 내부와 외부에서 요청하거나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고 관리</li> <li>○ <b>(연구개발)</b> 주요국의 축산물등급판정기준 및 기술개발</li> <li>○ <b>(국제협력사업 관리)</b> 수원국(개발도상국)에 대한 축산물유통관리체계, 이력제, 등급제 교육으로 한국형 표준화 유도</li> </ul>		
<b>전형방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류전형 → 필기전형(인성검사·직업기초능력평가·직무수행능력평가) → 면접전형 → 신체검사 → 임용(수습3개월)</li> </ul>		



<b>일반요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원 인사규정에 의거 최종시험일(면접) 기준 정년 60세 이하인 자</li> <li>○ 우리원 인사규정에 의거 색각이상자 지원불가(공고문 참고)</li> </ul>
<b>교육요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산학과 또는 관련학과 졸업(예정)자(공고문 참고)</li> </ul>
<b>자격요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익 630점 이상에 해당하는 어학점수 보유자(공고문 참고)</li> </ul>
<b>필요지식</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축산식품저장·축산물이력제사업)</b> 축산물 등급·이력제도와 관련 법령(축산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지식, 축산전공 지식</li> <li>○ <b>(축산식품유통사업)</b> 축산물의 유통흐름·가격 및 수출입 동향에 대한 지식, 기초 자료 조사를 위한 유통 개념 및 용어에 대한 지식</li> <li>○ <b>(축산식품가공)</b> 축산물의 품질기준 및 축산물 위생관리에 관한 지식</li> <li>○ <b>(축산자원개발 및 사육관리)</b> 축종별 사양관리 방법, 축산경영, 관련 통계 활용 지식</li> <li>○ <b>(고객관리)</b> 고객 관계·심리·응대기술, 고객 데이터 관리, 고객요구 분석</li> <li>○ <b>(사무행정)</b> 문서기안 절차, 문서의 체계, 문서작성 규칙, 문서관리 규정, 조직도 이해, 보안규정,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 매뉴얼,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 매뉴얼,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 매뉴얼, 전자정보시스템 운영 매뉴얼, 기본 회계 지식, 회계규정, 회의에 사용되는 물품과 장비 운영매뉴얼, 직제규정, 사무기 기운용 매뉴얼</li> <li>○ <b>(연구개발)</b> 각 축종별 사양관리, 도축 및 유통체계 등 전반지식</li> <li>○ <b>(국제협력사업 관리)</b> 국내외 공적자원개발사업(ODA) 이해</li> </ul>
<b>필요기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축산식품저장·축산물이력제사업)</b> 축산물품질평가 및 관리 기술, 이력관리 기술</li> <li>○ <b>(축산식품유통사업)</b> 축산물의 가격 및 수출입 동향에 대한 정보입수 및 분석 기술</li> <li>○ <b>(축산자원개발 및 사육관리)</b> 정보수집 및 분석 기술, 고객 니즈에 맞는 컨설팅 항목 선정 능력, 컨설팅 내용 구조화 능력, 설득 기술</li> <li>○ <b>(고객관리)</b> 다양한 요구와 고객 형태 등에 맞는 응대 기술, 고객 니즈에 맞는 고객요구 분석, 소통 및 설득 기술, 문제 상황 분석 기술, 대응매뉴얼 개발 및 수정 능력</li> <li>○ <b>(사무행정)</b> 부서(팀) 구성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문서관리, 문서작성, 데이터 관리, 사무자동화 관리 운용 등 조직 내부와 외부에서 요청하거나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고 관리</li> <li>○ <b>(연구개발)</b> 주요국의 축산물등급판정기준 및 기술개발</li> <li>○ <b>(국제협력사업 관리)</b> 수원국(개발도상국)에 대한 축산물유통관리체계 이력제, 등급제 교육으로 한국형 표준화 유도</li> </ul>
<b>직무수행 태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직자로서의 공공성, 법규 준수, 안전·위생·방역사항 준수, 민원인과의 적법 관계 유지,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 주인의식, 책임감, 청렴성, 협력적 태도</li> </ul>
<b>직업기초 능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기개발능력, 문제해결능력, 대인관계능력, 조직이해능력, 직업윤리, 수리능력, 의사소통능력, 자원관리능력</li> </ul>
<b>참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 href="http://www.ncs.go.kr">www.ncs.go.kr</a> 홈페이지 → NCS·학습모듈검색</li> </ul>

[붙임 2] 응시자격기준

□ 외국어능력 기준

외국어능력의 종류 및 기준점수표

구분	영 어			일본어	중국어
시험종류	TOEFL(iBT)	TOEIC	TEPS New TEPS	JPT	HSK
성적기준	IBT 70점	630점	500점 268점	630점	新5급 180점

비 고 : 위 표에서 정한 시험은 당해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역산하여 2년 이내의 자료를 인정한다.

[붙임 3] 결격사유

「인사규정」 제22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병역의무불이행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비위면직자 등으로 취업을 제한받는 사람
9.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사람 <신설 2018. 7. 5.>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채용 전 파렴치 범죄, 폭력 및 경제관련 범죄, 그 밖에 불량한 범죄를 범하여 직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임용하지 아니한다.

「직원채용 업무지침」 제13조(신체검사) ① 원장은 직원을 채용할 경우 신체검사를 하여야 하며, 신체검사합격기준에 미달한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다만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제5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신체검사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다만, 축산물품질평가직 지원자 중 색각이상자는 채용할 수 없다

## 1.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①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2.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3.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4.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
5.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

[전문개정 2011. 9. 15.]

## 2.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시행령 제3조(장애인의 기준) 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9. 12. 31., 2017. 6. 27.>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09. 12. 31., 2010. 7. 12., 2016. 6. 21., 2017. 6. 27.>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제1항 전단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 2의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전단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3. 제1항 각 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발행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진단서

### 3. 비수도권 지역인재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비수도권 지역인재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대학”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지역균형인재”(이하 “지역인재”라 한다)란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말한다.

#### ※ 비수도권 지역인재 세부기준

- (비수도권 지역인재) 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서울·경기·인천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를 졸업(예정)·중퇴한 자 또는 재학·휴학 중인 자

#### □ 비수도권 지방학교의 범위

##### 가. 지방대학에 포함되는 대학

- (1) 본교가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상의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 (2) 「고등교육법」 제24조 상의 분교로서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 (예시) 단국대 천안캠퍼스, 동국대 경주캠퍼스, 상명대 천안캠퍼스, 연세대 원주캠퍼스, 홍익대 세종캠퍼스 등
- (3)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지역대학 중 서울·경기·인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지역대학
- (4)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 제3항에 의해 설치된 과학기술대학

##### 나. 지방대학에 포함되지 않는 대학(예시)

- (1) 본교가 서울·경기·인천에 소재하는 대학 및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경기·인천 지역대학
- (2)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
- (3) 사이버대학, 디지털 대학 등 「평생교육법」상의 평생교육시설
- (4) 외국대학 및 외국대학의 국내분교

#### □ 그 외의 지방인재에 해당하는 경우

- (1) 최종학력이 고졸이하인 경우에는 최종학교 소재지가 비수도권인 경우
- (2)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 중퇴자로서 경찰대학·사관학교를 제외한 최종 출신 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 (3) 대학원 및 사이버·디지털 대학 등의 평생교육시설을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또는 독학사, 학점인정에 의한 학위 취득자,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당해 학력을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 4. 이전지역 지역인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이전지역 지역인재

### 2. 용어의 정의

#### 가. 이전 지역인재의 개념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의 광역시·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지방대학 및 고등학교(이하 “이전지역 학교”라 함)를 최종적으로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 대학졸업예정자는 4년(=8학기, 전문대학의 경우 2년=4학기)이상 등록하고, 최종학기 수강신청학점을 포함해서 졸업학점에 도달된 자로서, 재학 중인 학교의 학칙에 따라 졸업예정자로 인정되어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야 하고, 이전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시점에 제출 할 수 있어야 함.

### ※ 이전지역 학교의 세부기준

-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하며,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사이버대학은 제외), 기술대학, 각종학교
  -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지역대학 중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지역대학은 이전지역 학교에 포함
- 특별법으로 설치된 다음 학교는 졸업 후 임용이 보장되고 일정기간 복무의무를 지며 국고에서 학비를 부담하므로 소재지에 관계없이 제외
  - 가. 「경찰대학 설치법」에 의한 경찰대학(경기)
  - 나. 「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한 육·해·공군사관학교(서울·경남·충북)
  - 다.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한 국군간호사관학교(대전)
  - 라.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한 육군 제3사관학교(경북)
- 「고등교육법」 제24조상의 “분교”인 경우는 분교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함

예시
○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미전지역학교에 해당함 -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는 고등교육법 제24조 상의 분교
○ 성균관대학교 수원캠퍼스 : 지방학교에 해당하지 않음 - 성균관대학교 수원캠퍼스는 고등교육법 제 24조상의 분교가 아님

-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및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 외국학교 및 지방에 있는 외국학교의 분교는 제외



### 3. 자격 사항

\* 자격은 직무와 관련된 국가공인 기술/전문/민간 자격을 의미합니다. 해당 자격증을 정확히 기입해 주십시오.

자격증명	발급기관	취득일자

### 4. 경험 혹은 경력사항

\* 경력은 금전적 보수를 받고 일정기간 동안 일했던 이력을 의미합니다. 아래의 지시에 따라 해당되는 내용을 기입해 주십시오.

- 직무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예'라고 응답한 항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아래에 기입해 주십시오.

근무기간	기관명	직위/역할	담당업무

그 외 모든 경력사항은 아래에 기입해 주십시오.

근무기간	기관명	직위/역할	담당업무

### 5. 직무관련 기타 활동

\* 직무관련 기타 활동은 직업 외적인(금전적 보수를 받지 않고 수행한) 활동을 의미하며, 팀 프로젝트 활동, 연구회 활동, 동아리/동호회 활동,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 재능기부 활동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지시에 따라 해당되는 내용을 기입해 주십시오.

- 직무 관련 활동을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예'라고 응답한 항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아래에 기입해 주십시오.

활동기간	소속조직	주요역할	활동 주요내용

※ 양식은 위탁업체의 시스템에 맞게 변경하여 사용예정

## 자 기 소 개 서

1. [자기개발능력] 최근 5년 동안에 귀하가 성취한 일 중에서 가장 자랑할 만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귀하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500자 내외, 12점)

\* 다른사람과 차별화 된 본인의 역량과 결부시켜 작성

2. [문제해결능력] 예상치 못했던 문제로 인해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았을 때,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끝까지 업무를 수행해내어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던 경험이 있으면 서술해 주십시오. (500자 내외, 12점)

3. [대인관계능력] 약속과 원칙을 지켜 신뢰를 형성/유지했던 경험에 대해 기술해 주세요. (500자 내외, 12점)

4. [조직이해능력] 우리 기관에 입사 지원한 동기 및 입사 후 실천하고자 하는 목표를 다른 사람과 차별화 된 본인의 역량과 결부시켜 작성해 주십시오. (500자 내외, 12점)

5. [직업윤리] 직장인으로서의 직업윤리가 왜 중요한지 본인의 가치관을 중심으로 설명하십시오. (500자 내외, 12점)

6. [경험 혹은 경력사항] (2,000자 내외, 40점)

- 입사지원서에 기술한 경력 및 직무관련 기타 활동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
- 구체적으로 본인이 수행한 활동내용, 소속조직이나 활동에서의 역할, 활동결과 등 작성





## 서류 심사표

수험번호		심사위원	(서명 또는 인)	
입사지원서 심사	적격	부적격	사유	
자기소개서 일반문항	구 분	주요 관찰사항		평정점수
	자기개발	○ 본인이 추구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 행동증거의 구체성		/ 12점
	문제해결	○ 문제가 발생한 상황의 구체성 및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증거의 구체성		/ 12점
	대인관계	○ 신뢰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가치관(생각) 또는 행동증거 표출의 구체성		/ 12점
	조직이해	○ 기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원한 동기와 실천하고자 하는 목표의 구체성 및 명확성		/ 12점
	직업윤리	○ 직장인으로서 직업윤리의 이해정도 및 본인의 가치관과 결부한 효과적인 표현여부		/ 12점
	경험 혹은 경력사항	○ 지원한 직무에서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에 대한 설명의 구체성, 역량의 정도, 지원한 직무와 관련하여 본인의 경험과 경력 효과적인 기술여부		/ 40점
가점	○ 취업지원대상자		/ 10점 이내	
	○ 장애인		/ 5점	
	○ 기타 가점		/ 2점	
평가점수 합계			/ 112점	

### ※ 평가점수기준표

구분	배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일반문항	12점	10점 이상	7~9점	4~6점	2~3점	2점 미만
경험 혹은 경력사항 기술	40점	32점 이상	23~31점	14~22점	5~13점	5점 미만

## 면접 평가표

수험번호		심사위원	(서명 또는 인)
구 분	주요 관찰사항		평정점수
용모·품행 및 성실성	<input type="radio"/> 복장(머리, 옷매무새 등)은 단정한가? <input type="radio"/> 응답자세, 시선, 예의범절은 바른가? <input type="radio"/>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지니고 있는가?		/ 15점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input type="radio"/> 침착성과 적극성을 겸비하고 있는가? <input type="radio"/> 창의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가? <input type="radio"/> 발전가능성이 있는가?		/ 15점
의사발표의 정확성 및 논리성	<input type="radio"/> 의사표현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하는가? <input type="radio"/> 질문에 대해 논리정연하게 설명하는가? <input type="radio"/> 주관이 뚜렷한가?		/ 15점
전문지식 및 일반교양	<input type="radio"/> 지원분야에 대한 지식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input type="radio"/> 일반교양 및 상식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 15점
공공기관 직원으로서의 자질	<input type="radio"/> 가치관이 우리기관의 업무와 일치하는가? <input type="radio"/> 우리기관에 대한 지식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input type="radio"/> 협동심과 사회성이 좋은가?		/ 20점
인성 및 적성	<input type="radio"/> 인성 및 적성의 적절성은?		/ 20점
가점	<input type="radio"/> 취업지원대상자		/ 10점 이내
	<input type="radio"/> 장애인		/ 5점
평가점수 합계			/ 110점

### ※ 평가점수기준표

구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배점(20점)	18점 이상	16~17	14~15점	12~13점	12점 미만
배점(15점)	14점 이상	12~13	10~11	9	9점 미만